



「NH청년도약계좌」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NH청년도약계좌
- 상품특징 : 청년고객 대상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

2 거래 조건

☞ **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**

(작성기준일 : 2024. 3. 26.)

구분	내용
가입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나이 :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. 현역병,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나. 사회복무요원 다.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개인소득 :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개인소득 기준^{주1)}</u>을 충족하는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,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<p>주1)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</p>

<p>가입대상 (계속)</p>	<p>다. 가, 나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, 복무 중인 병(兵)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</p> <p>※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유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,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병(兵) 급여</p> <p>③ 가구소득 :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<u>가구소득 기준^{주2)}을 충족</u>하는 사람</p> <p>가.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<u>기준 중위소득</u>(이하 “기준 중위소득”이라 합니다)의 <u>250% 이하</u> 일 것</p> <p>나. <u>가구소득</u>은 가구원의 총급여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,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, 연금소득,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(단, 미성년자인 형제·자매의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합니다)</p> <p>다. <u>가구원^{주3)}</u>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)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(단, 형제·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,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)</p> <p>주2)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</p> <p>주3)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을 판단하기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 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</p> <p>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<u>3개^{주4)}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“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”</u>(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)<u>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</u></p> <p>주4)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,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”로 확인되면 납입중지(가입대상 미해당) 처리됩니다.</p>
<p>가입제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(중복가입 불가) •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체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, 공동명의 불가
<p>상품유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유로우대적금
<p>거래방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 및 해지 : 영업점, 비대면 채널(자동만기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) •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, 비과세 미적용 및 정부 기여금 지급 불가 • 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능
<p>계약기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0개월

<p>가입금액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, 매월(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 70만원 이하,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 ※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며,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로부터 1년 단위의 납입 가능 금액 (예: '23. 7. 10. 가입 시: 1년차 기준 '23. 7. 10.~'24. 7. 9.) 										
<p>일시납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 최초 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^{주5)} 가능하며, 가입 후 2개년^{주6)} 동안 납입 한도는 1,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주5) 최소 납입금액 200만원 이상(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) 주6) (예시) '24.2.22. 가입 시 2개년 → '24.2.22. ~ '26.2.21. 200만원 이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하 금액에서 일시납입 금액, 일시납입 기간 선택 후 일시납입 확정(서민금융진흥원 확인) ※ 일시납입 차감금액(월) : 40만원, 50만원, 60만원, 70만원 중 선택 일시납입 금액 : 200만원 이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하 최초 납입한 일시납입 금액만큼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되는 구조로 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납입 할 수 없음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 (예시)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】</p> <p>※ (가정) 매월 50만원, 13개월, 총 650만원 일시납입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3 1227 1444 1379"> <thead> <tr> <th>가입일</th> <th>1년차</th> <th>2년차</th> <th>일시납입 기간</th> <th>정상납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'24.2.22.</td> <td>'24.2.22.~ '25.2.21.</td> <td>'25.2.22.~ '26.2.21.</td> <td>'24.2.22.~ '25.3.21.</td> <td>'25.3.22.~3.31. 동안 월 70만원 이내 납입 가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- 일시납입 기간 경과 후 부터는 정상적인 청년도약계좌 저축한도 기준에 따름 (예시) 위 경우처럼 일시납입 기간이 '25.3.21.에 종료되면 '25.3.22.부터 월 70만원, 연 840만원의 한도로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은행 앱에서 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 (ylaccount.kinfa.or.kr)를 통해 일시납입 정보*를 등록해야 일시납입 가입 신청이 완료됨 * 일시납입 금액, 일시납입 기간 등 일시납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('24.2~3월)의 다음달('24.3~4월)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해야 함 * (예시) 희망적금 만기 '24.2.22.이면 '24.3월까지 도약계좌 가입신청 필요 희망적금 만기 '24.3.3.이면 '24.4월까지 도약계좌 가입신청 필요 ※ 청년도약계좌는 해지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함에 따라, 일시납입 신청 및 계좌개설 후 중도해지 시에는 일시납입으로 신청이 어려움 	가입일	1년차	2년차	일시납입 기간	정상납입	'24.2.22.	'24.2.22.~ '25.2.21.	'25.2.22.~ '26.2.21.	'24.2.22.~ '25.3.21.	'25.3.22.~3.31. 동안 월 70만원 이내 납입 가능
가입일	1년차	2년차	일시납입 기간	정상납입							
'24.2.22.	'24.2.22.~ '25.2.21.	'25.2.22.~ '26.2.21.	'24.2.22.~ '25.3.21.	'25.3.22.~3.31. 동안 월 70만원 이내 납입 가능							

<p>일시납입 (계속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시납입한 사람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, 일시납입한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납입중지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가입 후 해당 사유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, 은행에서는 해당 계좌 납입중지 처리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가입 시 적용되는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,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에 특별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 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 										
<p>이자지급시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										
<p>원금 및 이자지급제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										
<p>기본이자율</p>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25 1081 1426 1323"> <thead> <tr> <th>기간</th> <th>기본 이자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최초 3년</td> <td>연 4.5%</td> </tr> <tr> <td>3년 초과 ~ 5년 이내</td> <td>적용금리 변경시점에 농협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 이자율 적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가입일 당시 농협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을 적용하며,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기본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작성기준일 현재 기본이자율이며 실제 적용이자율은 가입일의 고시금리에 따름 	기간	기본 이자율	최초 3년	연 4.5%	3년 초과 ~ 5년 이내	적용금리 변경시점에 농협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 이자율 적용				
기간	기본 이자율										
최초 3년	연 4.5%										
3년 초과 ~ 5년 이내	적용금리 변경시점에 농협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 이자율 적용										
<p>우대이자율 (연%p, 세전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고 연 1.5%p (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 적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가입 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NH농협은행 입출식 계좌로 급여입금 실적^{주7)} 우대 : 최고 0.5%p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25 1749 1394 1964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세부조건</th> <th>우대이자율(세전, 연 %p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급여입금실적</td> <td>12개월 이상</td> <td>0.1</td> </tr> <tr> <td>36개월 이상</td> <td>0.3</td> </tr> <tr> <td>50개월 이상</td> <td>0.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7) 급여입금실적 인정기준은 농협은행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 급여이체 기준을 준용하며, 월별 5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,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</p>	세부조건		우대이자율(세전, 연 %p)	급여입금실적	12개월 이상	0.1	36개월 이상	0.3	50개월 이상	0.5
세부조건		우대이자율(세전, 연 %p)									
급여입금실적	12개월 이상	0.1									
	36개월 이상	0.3									
	50개월 이상	0.5									

「급여입금 인정기준 주요내용」

※ 급여는 농협* 급여이체와 타행 급여이체로 구분되며,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, **입금월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**됩니다.

* 농협 : NH농협은행, 지역농·축협

예시) 9월 30일(일) 급여일인 경우 휴일로 10월 1일(월)에 급여가 입금된 경우
→ 9월 급여실적 인정(X) / 10월 급여실적 인정(O)

1. 농협 급여이체 : 급여 코드로 입금된 경우
2. 타행 급여이체 : 통장 기록사항에 “급여, 월급, 봉급, 상여(상여금), 보너스, 성과급, 급료, 임금, 수당, 연금, 보수, 월보수, salary , pay” 등으로 기록된 경우
3. 급여이체일 등록 : 고객이 지정한 급여이체일자를 등록 후 해당일(±1영업일을 포함)내 입금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

우대이자율
(연%p, 세전)
(계속)

② 가입 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농협은행 NH채움(개인 신용/체크)카드 이용실적^{주8)} 월 평균 20만원 이상 우대 : **0.2%p**

주8) 농협은행 NH채움(개인 신용/체크)카드 승인 기준(현금서비스 제외)

③ 적금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(청약포함) 미보유 또는 NH청년 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우대 : **0.1%p**

* 직전 1년간 기준 : (신규일 전일 - 1년) ~ 신규일 전일까지

④ 적금가입 시점에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서(⑦번 동의서) 전체 동의 고객 우대 : **0.2%p**

* 신규 시점에 ⑦번 동의서 전체동의 시(개설완료 후 동의 시 적용불가)

⑤ 소득⁺ 우대 : **최고 0.5%p**

▶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*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

- 5회 : 우대금리(0.5%p), 4회 : 우대금리×80%, 3회 : 우대금리×60%, 2회 : 우대금리×40%, 1회 : 우대금리×20%

* 총급여 2,400만원 이하, 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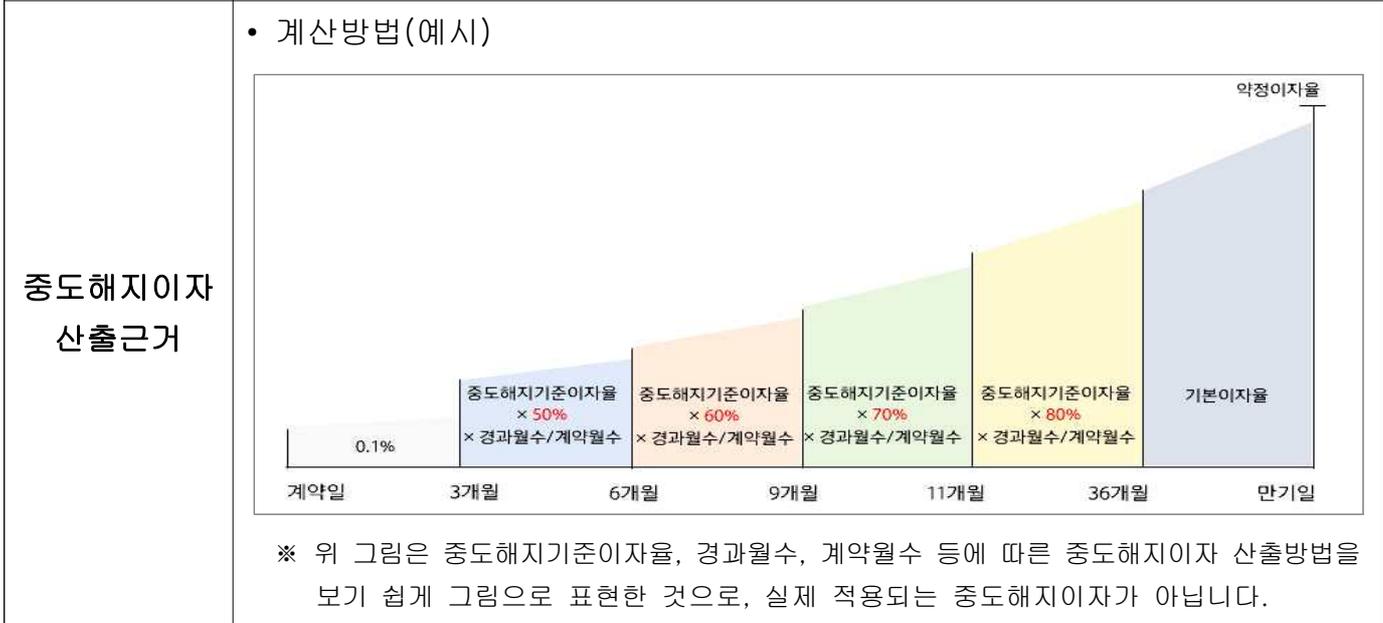
중도
해지이자율
(연%, 세전)

- **36개월 미만** 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자유로우대적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

경과기간	적용이자율 / 적용률
3개월 미만	0.1%
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중도해지 기준이자율 × 5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
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	중도해지 기준이자율 × 6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
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	중도해지 기준이자율 × 7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
11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	중도해지 기준이자율 × 8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

중도 해지이자율 (연%, 세전) (계속)

- **36개월 이상** 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NH청년도약계좌 기본이자율 적용
(※ 기본이자율이 변경된 경우,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기본이자율 적용)
- 중도해지이자율 : 소수 셋째자리까지 적용(소수 넷째자리에서 절사)
- 중도해지 최저 이자율은 0.1%
-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, 월 미만 일수는 버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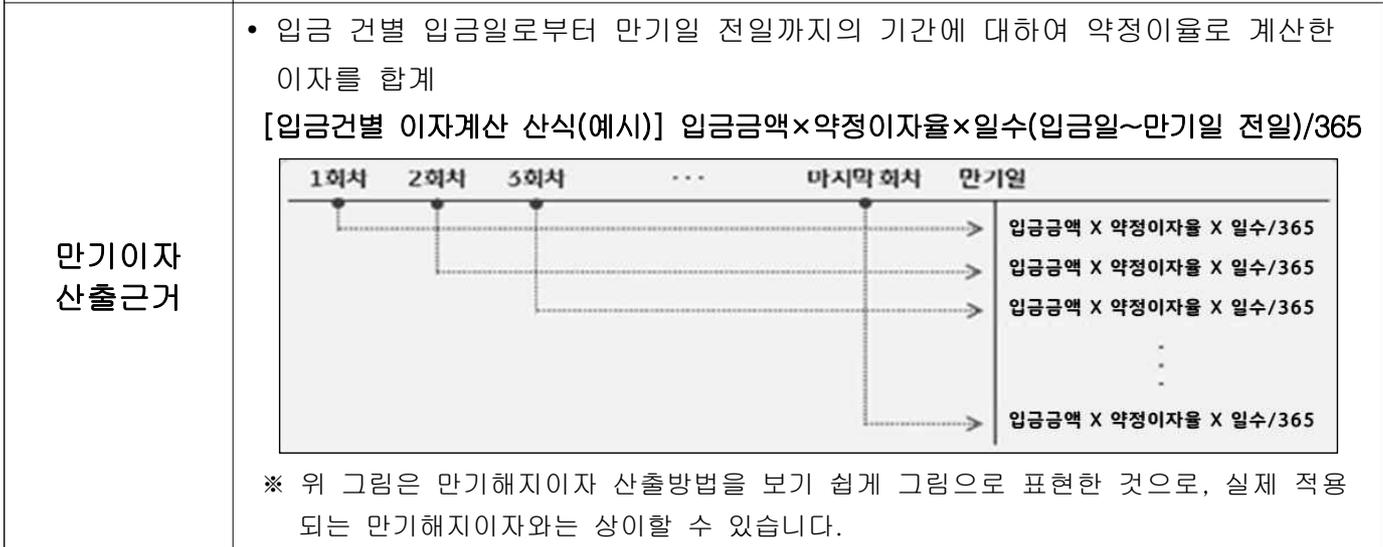


만기후 해지이자율 (연%, 세전)

- 자유로우대적금 만기후이자율 적용

경과기간	적용이율	경과기간	적용이율
만기 후 1년 이내	만기시점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의 1/2	만기 후 1년 초과	보통예금 이자율

※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농협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공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씌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
(단, 만기일 이후 금리가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는 변동된 만기 후 이자율 적용)



특별중도해지

- 아래 사유 발생 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
 -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
 -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
(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 시 가능)
 - 가. 천재지변 나. 가입자의 퇴직 다. 사업장의 폐업
 - 라.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·질병의 발생
 - 마.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 - 바. 가입자의 주택 취득
 - ※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「소득세법」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
 - 사.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(배우자의 출산 포함)
- 적용 이자율 :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한 기본이자율(※ 우대이자율 제외)

정부기여금

-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(특별중도해지 포함)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

개인소득		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	정부기여금 지급비율 ^{주9)}
총급여 기준	종합소득 기준		
2,400만원 이하	1,600만원 이하	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	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.0%
2,400만원 초과 3,600만원 이하	1,6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	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.6%
3,600만원 초과 4,800만원 이하	2,600만원 초과 3,600만원 이하	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	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.7%
4,800만원 초과 6,000만원 이하	3,600만원 초과 4,800만원 이하	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	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.0%
6,000만원 초과	4,800만원 초과	미지급	미지급

주9) 가입대상 ② 개인소득의 다에 따라 가입한 사람은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% 적용

※ 정부기여금 예시

① 개인소득 2,000만원 가입자가 '23.8.1. 신규가입 후 매월 4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⇒ 납입원금 2,400만원 × 6% = 144만원

② 개인소득 6,500만원 가입자가 '23.8.1. 신규가입 후 매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⇒ 미지급

①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,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

<p>정부기여금 (계속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 (다만,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) ③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④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⑤ 계약기간 동안 추심,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상품 특약에 동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, 지급액,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하고,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저축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/div>
<p>정부기여금 산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(총 5회)에 따라 결정되며,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* 단,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턴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* * (예시) '23.7.10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1년차('23.7.10~'24.7.31), 2년차('24.8.1~'25.7.31), 3년차('25.8.1~'26.7.31), 4년차('26.8.1~'27.7.31), 5년차('27.8.1~'28.7.9) • 개인소득 심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,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결정 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일시납입한 금액의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로 산출 단, 이 적금에 일시납입한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 지급
<p>재가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도해지(특별중도해지 포함) 후 재가입 가능하나,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(재가입) 가능 • 중도해지(특별중도해지 포함)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^{주10)}을 적용하여 산출(단, 원단위 미만은 절사) 주10) [계약기간 - 재가입 전 가입기간] / 계약기간 *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턴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(올림하여 환산)을 의미하며,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

<p>세제혜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 ※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※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• 단,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 		
<p>담보제공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능 		
<p>부분인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불가 	<p>양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불가
<p>재예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불가 	<p>명의변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불가
<p>자동이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이체 출금계좌가 타행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동이체 신청해야 하며, 타행자동이체는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. • 이에 따라 매월 말일로 자동이체 설정 시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됨에 따라 다음 달 첫 영업일에 입금되어 해당 월 입금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일 자동이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.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(예시) 상품 : NH청년도약계좌 / 타행자동이체 등록 : 매월 말일, 월 70만원(최대한도) '24. 3. 31.(일) 자동이체 미처리, 4.1.(월) 자동이체 처리 → 이후 자동이체 처리일자 5.31.(금) → 3월 미납된 금액은 소급 적용 불가</p> </div>		
<p>계약해지방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•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•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, 비과세 미적용 및 정부 기여금 지급 불가(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포함) 		
<p>위법계약 해지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		

<p>휴면예금 및 출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“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•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. 	
<p>예금자보호 여부</p>	<p>해당</p> 	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p>

3 | 유의사항

- 이 적금은 농협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,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,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 되는 자료로써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적금은 본인 이외에 대리인 가입은 불가하며, 가입신청은 비대면 채널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, 영주증, 국내거소신고증에 한하며,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.
-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 (단,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한 경우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.)
-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(취소·변경 등)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-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**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**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<https://banking.nonghyup.com>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**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** 또는 **e-금융민원센터(<https://www.fcsc.kr>)**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(상품개발부서 : 개인고객부)

<별지1> 예금성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

구 분	내 용	
자료열람 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•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	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	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	<p>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상담센터(1661-3000, 1522-3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banking.nonghyup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p>	
예금자보호 여부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당</p> 	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p>

<부록>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명
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총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